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전적 기증관리 운영세칙

제정 2007. 08. 30.

개정 2008. 10. 31.

개정 2013. 03. 25.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국가, 단체, 문중, 개인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에 기증한 고전적 자료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하기 위해 운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고전적”은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고서화, 목판 등을 의미한다(이하 “고전적”이라고 한다).

②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고전적의 모든 권리를 연구원에 양도함을 말한다.

③ “수증”이라 함은 기증 고전적을 연구원의 소장 고전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증절차)

개인 또는 단체가 연구원에 기증 의사를 제의할 경우 원장은 담당자를 파견하여 기증조건, 기증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학술적 가치, 보존가치 등을 감정 받은 후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기증조건)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에게 감사패 등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5조(기증범위)

원본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고전적과 함께 관련 유물도 일괄 기증할 수 있다.

제6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① 소장 경위와 출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고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 및 소송의 여지가 있는 경우

② 연구원에서 필요치 않는 고전적 또는 보관상의 문제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증증서의 교부)

원장은 고전적을 수증한 후, 기증자에게 수증한 고전적의 명칭, 수량 등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수증증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관리운영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운영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운영세칙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受贈證書

○○○ 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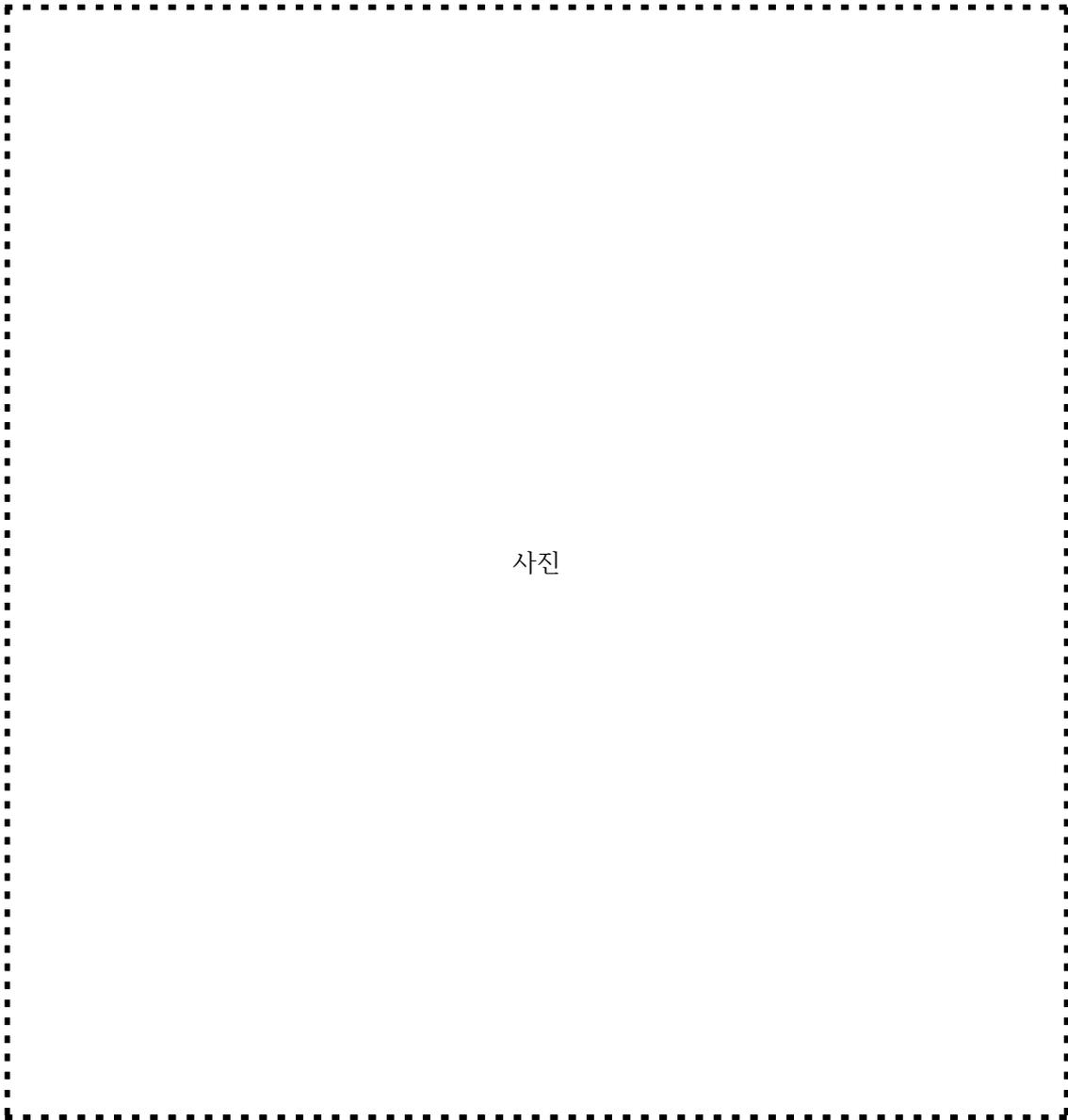
貴下が 寄贈하신 ○○○○○건 ○점의 文化財를 寄
贈하신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에서 最先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研究에 적극 活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 ○○. ○○.

서울大學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長



[별지 서식]



寄贈文化財目錄

名稱	點數	名稱	點數